



## 보도자료

▶ 고용서비스지원과장 김영국  
사무관 황선범

T E L : 02-2110-7145

E-MAIL : hsunbum@hananet.net

F A X : 02-6902-8422

▶ 2008. 9. 30 배포

▶ 총 2 쪽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#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

- 실업급여, 고용안정지원사업 ; '08.10.1~ 10.31(1개월간)
-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보

- 노동부는 2008년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.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,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이다.
  - 이번에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켜 동 제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고 고용보험 재정을 위협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.
- 또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**시민의 제보**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이 제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.
  - 제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,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제보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.

○ 노동부는 고용보험사업관련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 하반기에 「고용보험 부정수급 종합방지대책」을 마련하고 「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」을 가동하고 있으며 지방에 「부정수급조사팀」을 설치(6개 지방청)하고 「부정수급조사관」을 임명(153명)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노력을 강화해 온 결과,

- '08.8월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전년 동기 대비 29.6% 감소하는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.

(단위 : 명, 백만원, %)

구 분	'07. 8.	'08. 8.	증가율
부정수급자	10,400	12,014	15.5
부정수급액	8,019	5,648	△29.6

○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종전과 달리 고용보험정보, 타 사회보험정보, 국세청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.

구 분	부정수급 자진신고	시민 제보
기 간	▶ '08. 10.1 ~ 10.31(1개월간)	▶ 제한없이 계속 받음
장 소	▶ 실업급여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고용지원센터 (부정수급 조사관)	▶ 노동부 홈페이지 「국민마당」 < <a href="http://www.molab.go.kr/">http://www.molab.go.kr/</a> > ▶ 부정수급자 주거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(부정수급 조사관, 기업지원과)
대상자 혜택	▶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▶ 형사고발 유예	▶ 최근 1년이내 발생한 부정수급 제보자 ▶ 포상금 지급 : 부정수급액의 20%, 1건당 최고 100만원 (고용안정 300만원), 여러 건인 경우 연간 300만원